

의안번호	제864호
의결 연월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유상용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3월 4일

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유상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6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년 3월 4일

발 의 자: 유상용 · 이정범 · 김성대
김정일 · 박병천 · 박봉순
박진희 의원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조항 및 용어를 현행화하고,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개정(안 제1조)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개정(안 제3조제3항)
- 다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개정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붙임
- 나. 비용추계: 붙임
- 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정책기획과

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66조의3 및 제132조에 따라”를 “제78조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8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 및 제132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 제78조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----- ----- ----.
제3조(비용추계서 작성 대상) ①. ② (생략)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주민대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·첨부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	제3조(비용추계서 작성 대상) ①. ② (현행과 같음)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----- ----- ----- -----.
제7조(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) 충청북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「지방자치법」 제132조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업무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비용추계작성 및 조례안이 마련 되도록 협조한다.	제7조(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) 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8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9조(조례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청구)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조례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·청구대상·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78조(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48조(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)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약칭:교육자치법)

제3조(「지방자치법」과의 관계)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「지방자치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 또는 “시·도지사”는 “교육감”으로, “지방자치단체의 사무”는 “지방자치단체의

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”로, “자치사무”는 “교육·학예에 관한 자치사무”로, “행정안전부장관”·“주무부장관” 및 “중앙행정기관의 장”은 “교육부장관”으로 본다.

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없 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

3. 미첨부 사유

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례 조항 및 용어를 현행화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